규정입안서

1. 부서명 : 교무처

2. 규정명칭 : 학칙

3. 개정 목적
   -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반영
   - 교양필수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
   -「멘토링프로그램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」제정에 따라 학점 취득 근거 조항 마련

4. 주요내용
   -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명칭 변경(→교육과정위원회) 반영(제30조, 제31조)
   - 교양필수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(제30조, 제31조)
   -「멘토링프로그램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」제정에 따라 최대 수강 학점 초과하여 학점 취득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(제42조)

붙 임 : 학칙 개정(안) 1부. 끝.

학칙 개정(안)

2022. 11.

교무처

<신 · 구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	비고
학 칙	**학 칙**	
(제1조 ~ 제29조 생략)	(제1조 ~ 제29조 생략)	
제10장 교과의 이수	제10장 교과의 이수	
제30조 (**교육과정심의위원회**) ①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**교육과정심의위원회**를 둔다.	제30조 (**교육과정위원회**) ①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**교육과정위원회**를 둔다.**(2022.00.00 개정)**	* **교육과정심의위원회 명칭 변경(→교육과정위원회) 반영**
② **교육과정심의위원회**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② **교육과정위원회**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**(2022.00.00 개정)**	
③ **교육과정심의위원회**의 세부사항은 **교육과정심의위원회**규정으로 정한다.	③ **교육과정위원회**의 세부사항은 **교육과정위원회**규정으로 정한다.**(2022.00.00 개정)**	
제31조 (교과목의 분류)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목, 전공과목으로 구성되고, 학과(부)별 교육과정의 내용은 **교육과정심의위원회**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(2016.3.1 개정)	제31조 (교과목의 분류)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목, 전공과목으로 구성되고, 학과(부)별 교육과정의 내용은 **교육과정위원회**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(2016.3.1., **2022.00.0 개정**)	
② **교양과목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한다**.	② **~~교양과목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한다~~.(삭제)**	* **교양필수제도 폐지에 따라 삭제**
③ 학생은 자유로이 타 학과(부) 또는 동일 학부내 타 전공의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. 이 과목을 일반선택과목이라 한다.(2016.3.1 개정)	③ 학생은 자유로이 타 학과(부) 또는 동일 학부내 타 전공의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. 이 과목을 일반선택과목이라 한다.(2016.3.1 개정)	
④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.	④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.	
⑤ 교육과정에서 관련자격증 및 인증제 등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.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	⑤ 교육과정에서 관련자격증 및 인증제 등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.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	

현행	개정안	비고
(제32조 ~ 제41조 생략)	(제32조 ~ 제41조 생략)	
제42조 (학기당 취득학점) ① 학생의 매 학기당 취득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하고 매학기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최소 12학점, 최대 27학점을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다.(2022.1.24. 개정) ②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 3.3 이상인 경우에 9학점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매 학기당 취득기준학점인 18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(2009.1.30., 2015.2.13., 2022.1.24. 개정) ③ 12학점 미만의 신청으로도 해당학기에 졸업 이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소신청학점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. ④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6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.(2006.12.15., 2019.2.12. 개정)	제42조 (학기당 취득학점) ① 학생의 매 학기당 취득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하고 매학기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최소 12학점, 최대 27학점을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다.(2022.1.24. 개정) ②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 3.3 이상인 경우에 9학점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매 학기당 취득기준학점인 18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(2009.1.30., 2015.2.13., 2022.1.24. 개정) ③ 12학점 미만의 신청으로도 해당학기에 졸업 이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소신청학점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. ④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6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.(2006.12.15., 2019.2.12. 개정) **⑤ 제①항에도 불구하고, 멘토링프로그램 학점 인정 등 별도 규정에서 정한 경우에는 최대수강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.(2022.00.00 신설)**	*****「멘토링프로그램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」 제정에 따라 최대수강학점을 초과하여 학점 취득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
(제43조 이하 생략)	(제43조 이하 생략)	
<신 설>	**부 칙**	*** 부칙 신설 : 적용시기(2023학년도 1학기부터) 규정**
	1. 이 규정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적용한다.	

네